

『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<의정비심의위원회>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2조)
-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위원회의 운영(안 제4조)
- 간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수당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운영세칙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
(예상 비용이 연 1억 원 미만으로 추정)
- 기 타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<의정비심의회위원회>의 구성과 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집행부에서는 상위법과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본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